

의안번호	2201415
의 퇴 인	김도읍의원
회 답 일	2023.07.10.
추계번호	24D1681

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조의3(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·등사) 신설	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,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·직계 가족·형제자매·변호사는 검사에게 「형사소송법」 제266조의3제1항제1호 ¹⁾ 에 따른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음. 검사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8조의3(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·등사)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1) 「형사소송법」 제266조의3(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·등사)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(이하 "서류등"이라 한다)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·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.

1.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

2. 상세 사유

□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·등사(안 제8조의3 신설)

- 개정안에 따라 특정강력범죄²⁾사건의 피해자 등이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조건부 허가 시 신청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는 경우, 서면 통지 등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개정안은 통지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대법원 규칙에 위임하고 있고, 열람 또는 등사 신청에 대한 불허 또는 조건부 허가 건수, 통지 방법의 종류와 평균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 - －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등이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고 검사가 불허 또는 조건부 허가를 결정하여 통지가 필요한 건수를 현 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
 - － 참고로, 2023년 한 해 동안 특정강력범죄로 볼 수 있는 살인, 강도, 강간 등의 발생 건수는 25,337건(경찰청범죄통계 자료)
 - － 또한,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불허 또는 조건부 허가의 이유를 통지하는 방법에는 우편, 전화, 팩스, 이메일 등이 있고 방법별로 우편료, 전화요금 등의 비용이 발생하나 구체적인 통지 방법 등을 현 단계에서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

2) 제2조(적용 범위) ① 이 법에서 "특정강력범죄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.

1. 「형법」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[살인·존속살해(尊屬殺害)], 제253조[위계(僞計)등에 의한 촉탁살인(囑託殺人)등] 및 제254조(미수범. 다만,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)의 죄
2. 「형법」 제2편제31장 약취(略取), 유인(誘引)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 및 제294조(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)의 죄
3. 「형법」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(강간등 상해·치상), 제301조의2(강간등 살인·치사)의 죄 및 흥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(강간), 제297조의2(유사강간), 제298조(강제추행), 제299조(준강간·준강제추행), 제300조(미수범) 및 제305조(미성년자에 대한 간음, 추행)의 죄
4. 「형법」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,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(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)의 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「형법」 제297조, 제297조의2,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, 제305조 및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 죄
5. 「형법」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(강도), 제334조(특수강도), 제335조(준강도), 제336조(인질강도), 제337조(강도상해·치상), 제338조(강도살인·치사), 제339조(강도강간), 제340조(해상강도), 제341조(상습범) 및 제342조(미수범. 다만,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, 제331조의2 및 제33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)의 죄
6. 「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4조(단체 등의 구성·활동)의 죄

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죄는 특정강력범죄로 본다.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